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01
----------	-----

제 출 일 : 2026. 3. 5.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제안이유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구축된 공간임.
- 단순 판매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제품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으로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관의 운영을 통해 관내 당사자 조직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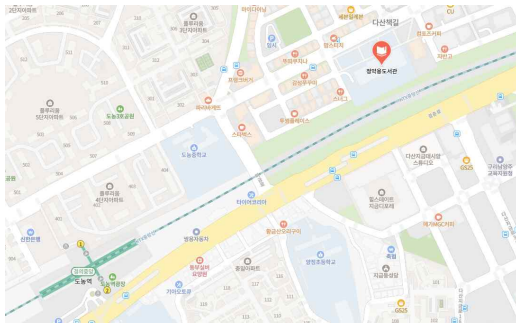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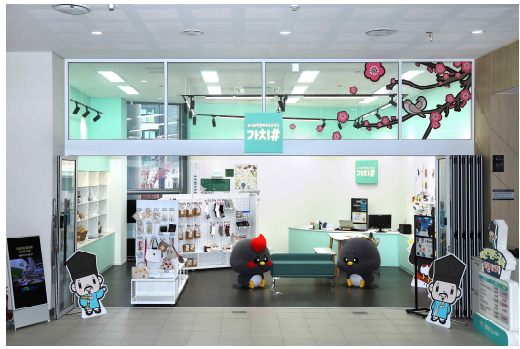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2. 위탁사무 내용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의 운영

- 홍보판매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 홍보판매장 이용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사회적경제 제품의 입점 심사, 재고 관리 및 매장 관리
- 제품 판매, 결제 시스템(POS) 관리 및 수익금 정산
- 입점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연계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기타 시장이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3.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소재지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 정약용도서관 1층	
조성일	2025. 10. 1.	
시설규모	○ 약52m ² ○ 주요시설 : 매대 등	
사업내용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위치도 & 현장사진		

4.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 위탁 가능
 - 다만, 최초 민간위탁 건으로 향후 관리운영 상황에 따라 재계약 및 계약 취소 등 행정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3년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1회 갱신 가능)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리위탁의 경우 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자격 제한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한경쟁 :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은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 지원 조직 등으로 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활용
 - 본 관리위탁은 별도의 위탁료나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고 운영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인 가격중심의 낙찰 방식(최저가 등) 적용이 부적합
 -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의 우수성, 당사자 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력,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가장 적정함.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위탁사업비: 없음

- 원가분석 결과, 시설 운영을 통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료 0원으로 책정
- 홍보판매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자체 수입(판매 수수료 등)으로 운영 인력의 인건비 및 직접 운영비를 우선 지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 운영비 충당 후 잔여 수익금이 발생할 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거나 위탁시설 개선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확립
- 별도의 위탁사업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관리에 드는 일부 경비는 지원 가능

【2024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p142】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으며,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7.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결과
<p>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p>	<p>○민간의 전문성과 유통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영보다는 관리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또한, 직영으로 운영시 인력 충원 등의 부담이 있음</p>
<p>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p>	<p>○단순 제품 판매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과 판로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p> <p>○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해 책임 경영과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공급 가능</p>
<p>경제의 효율성</p>	<p>○전문 노하우를 갖춘 민간 수탁자의 유연한 인력 운영과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행정 직영 대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마케팅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으로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p> <p>○시설 운영 수입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우선 충당하고 위탁료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탁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p>
<p>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p>	<p>○급변하는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 마케팅 전문성과 MD(상품 기획) 기술력을 활용하여, 단순 판매 위주의 수동적 관리 체계를 시장 지향적인 공격적 홍보 체계로 전환하고자 함</p> <p>○민간이 보유한 방대한 전문 네트워크를 시설 운영에 접목함으로써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당사자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가치 소비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p>
<p>성과 측정의 용이성</p>	<p>○매출액, 입점 기업 수, 방문객 수 등 수치화된 정량 지표를 통해 운영 실적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실적 보고와 정기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검증할 수 있음</p> <p>○사회적경제 인식 개선도, 당사자 조직의 참여 만족도, 브랜드 인지도 상승률 등 정성 지표를 병행 설정함으로써, 단순 수익 성과를 넘어선 지역 사회 기여도와 정책적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가능</p>
<p>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p>	<p>○민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점 기업 선정 및 판매수수료, 운영실적 및 정산보고 등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짐. 관련 조례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와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철저히 관리</p>

구 분	검토 결과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회적경제 제품의 유통·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본 관리위탁을 통해 지역 내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이 홍보판매장 운영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전문 인프라를 육성하고자 함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 운영 실적 분석을 통해 확인된 행정 직영의 한계를 민간의 유통·마케팅 전문성과 네트워크로 보완함으로써, 시설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 확산과 판로 지원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위탁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체 수입을 활용한 책임 경영과 민간 서비스 주체의 발굴·육성을 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9. 향후계획

- 2026. 3월 임시회 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수탁기관 공모 진행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146p	<p>6. 관리수탁자 선정</p> <p>가. 관리수탁자의 자격(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19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함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 5px 0;"> <p>▶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특수 시설물(병원,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맞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p> </div> <p>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 5px 0;"> <p>▶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p> <p>▶ 개별법을 등에 수의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p> </div> <p>1) 입찰에 의한 방식</p> <p>가) 입찰방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2)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14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협상에 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⑥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등)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회의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